

## 2021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

· 회의소집 통보일자

2021. 7. 13.

· 재적평의원

12명

1. 일시 2021년 7월 19일(월) 오전 11시

2. 장소 청출어룸 (본관 2층)

### 3. 참석평의원 및 불참평의원

구분	인원	성명
참석 평의원	10명	양고승, 정홍용, 김계하, 김태규, 김광원, 박용표, 정부성, 조정욱, 김용래, 박현정
불참 평의원	2명	김시욱, 이진렬

### 4. 출석관계자

- 조선대학교: 이경진 대학원장

### 5. 회의 내용

가. 개회 선언: 김시욱 의장의 권위로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4조 ④항에 의거하여 양고승 부의장이 2021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

#### 나. 부의 안건

- 1) 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심의
- 2) 조선대학교 정관 개정 요청(안) 심의

#### 다. 안건 심의

##### 1) 1호 안건 : 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심의

■ 제안 설명: 이경진 대학원장

■ 개정사유

- BK21 FOUR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공학과의 IT-Bio융합시스템 전공이 신설 및 운영되는 관계로 해당 전공 이수 완료 후 수여되는 석사 및 박사 학위종을 추가해야 함.
- 에너지자원공학과의 학과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관련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.
- 융복합창업학과는 학과간 협동과정이므로 해당 학과의 학위종별표를 학과간 협동과정 구분으로 변경하고자 함.
- 대학원 학위논문면제 제도 운영에 따른 학위기 양식 신설
- 대학원 학칙 제28조 제1항의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위논문 면제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대학원 학칙에 반영하기 위함.

■ 주요내용

- 04 14 2023
- 제12조 제5항: 특례대상자(논문면제과정) 명시 및 기존 수료연구생 시행 세칙 명칭 변경에 의한 수정
  - 제17조 제5항: 기존 수료연구생 시행 세칙 명칭 변경에 의한 수정
  - 제26조 제3항: 기존 수료연구생 시행 세칙 명칭 변경에 의한 수정
  - 제28조(석·박사학위) 제3항: 학위기 양식인 <제1-3호>, <제2-1호> 서식이 산업공학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문구 수정
  - 제31조의2 제2항: 기존 수료연구생 시행 세칙 명칭 변경에 의한 수정
  - 제31조의3 신설: 수료등록생(논문면제과정) 등록 및 운영사항 관련 명시
  - <별표1>: 에너지자원공학과를 첨단에너지자원공학과로 학과 명칭 변경
  - <별표2>: 에너지자원공학과를 첨단에너지자원공학과로 학과 명칭 변경/ 융복합창업 학과의 학위종 구분을 인문사회계열에서 학과간협동과정으로 변경
  - <별표2>의 학과·전공별 학위종별표 중 산업공학과의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에 'IT-Bio 융합학 석사', 'IT-Bio 융합학 박사'를 추가하고자 함.
  - <제1-4호 서식> 신설: 대학원 학위논문면제 제도 운영에 따른 학위기 양식 신설

### ■ 심의 내용

- 석사학위논문 면제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요청함.
- 석사학위논문 면제 제도가 타 대학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함.
- 에너지자원공학과의 학과 명칭 변경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함.

### ■ 심의 결과

- 원안대로 가결함.

## 2) 2호 안건 : 조선대학교 정관 개정 요청(안) 심의

### ■ 제안 설명: 양고승 부의장

### ■ 개정 사유

-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관에 민립대학 설립동지회원의 설립 취지 및 1·8 학원 민주화를 통한 설립 정신 계승을 명시하여 대학의 공공성을 제고 하고자 함.
- 민립대학으로서의 대학의 주체성 확보하고 1·8 학원 민주화 운동의 의의를 명시하고자 함

### ■ 주요 내용

- 제1장 총칙 제1조(목적)에 민립대학을 설립하고자 한 설립동지회원의 뜻과 1·8 학원 민주화 운동을 통한 설립정신 회복에 입각한다는 내용 추가

### ■ 심의 내용

- 제 단위별 추가 의견 수렴 후 재논의하자는 의견이 개진됨.

### ■ 심의 결과

- 조선대학교 정관 개정 요청(안)은 8월 9일 ~ 8월 13일 사이에 차기 회의를 개최하여 재논의 하기로 함.

라. 기타 사항

-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10조(회의록 작성 및 통보) ②항 '회의록에는 의장을 포함한 평의원 4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'에도 불구하고, 의장의 권위로 금회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서명은 참석평의원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양고승 부의장을 포함하여 정홍용 평의원, 김태규 평의원, 박용표 평의원이 서명하기로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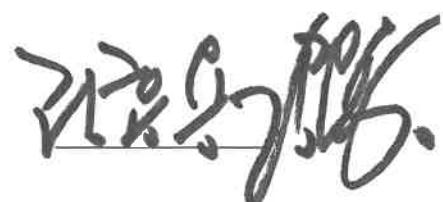
2021년 7월 19일

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함.

부의장 양고승



평의원 정홍용



평의원 김태규



평의원 박용표

